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

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
(안 제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동 찬)